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치매나 중풍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요양 신청 절차, 신청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은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식당. 〈광주일보 자료사진〉

"거동 불편 어르신 간병 서비스 받으세요"

■ 장기요양 신청 15일부터 접수

65세 이상·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1·2·3등급 판정 따라 7월부터 이용

오는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상 준비해야 서류들도 적잖다.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해당된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방문 조사 후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는 추후 제출해도 된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의사 소견서 대신에 별도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 질병**

(65세 미만)

구 분	질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쯔하이머병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현 ▲기타 비와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공단 조사결과 장기 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다.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가족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 자격이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가족과 친족이다.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기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장기 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인 노인이 해당된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가 대표적이다.

'장기요양 2등급'은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 3등급'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환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노인이 대상이다. 요양 1·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급여 내용은 시설 급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급여가 제공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에 대해 일정액이 지급된다. 특별 현금급여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형태로 지급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 절차**=신청 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보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등급~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1577-1000번 또는 국번 없이 129번.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버 라운지

권성옥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7%대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고령화 진입 시기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는 국가정책의 주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75%의 국민이 이 제도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복지 선진국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도 자체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첫째, 이 제도는 기존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복지에 관한 문제는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게 사실이다.

과거 가족에 의존하던 의식구조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면서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추세와도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구조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에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고, 전문인력의 충당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셋째, 복지에서도 경쟁원리의 도입이 예상된다. 복지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복지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는 복지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요(要)보호계층은 서비스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더 많은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설 것이다. 또 기관 홍보 등 일반기업의 서비스 원리를 도입,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시설을 운용하는 등 체질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시설 고급화 전략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부를 지닌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고급·유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복지 역시 이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복지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복지에서의 경쟁은 필연적인 현상이 되고, 그만큼 수요자에게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며,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